

-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충 청 남 도

목 차

< 일반 회계 >

☐ 재난안전실

- 하천과 ----- 3

☐ 건설교통국

- 건설정책과 ----- 11
- 건축도시과 ----- 17
- 교통정책과 ----- 23
- 도로철도항공과 ----- 49

☐ 해양수산국

- 수산자원과 ----- 57

< 특별 회계 :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

☐ 소방본부

- 119 광역기동단 ----- 65

재 난 안 전 실

하 천 과

하 천 과

1.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권역)(성립전) 6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권역)(성립전)	정책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단위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세부사업	국가하천유지보수 (금강권역)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가하천 친수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로 재해예방 및 주민 이용 편의 제공
- 사업 위치 : 금강·삽교천 수계 9개시군(공주·아산·논산·당진시, 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예 산 액 : 8,150,000천원
 - ※ 증감 사유 : 2020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수문 자동화) 선도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교부결정(변경)
- 사 업 량 : 국가하천 7개소(연장 240.14km, 고수부지 16.41km)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등 9개 시·군
- 사업 내용 :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보수(대전청 소관)
- 지원근거 : 하천법 27조 5항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⑤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국가하천 유지보수 ○ 금강 등 7개 국가하천 유지보수(대전청소관) 1식 = 8,150,000천원 - 스마트 홍수관리(수문 자동화) 4,030,000천원 - 시설 유지보수 4,12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 (B)	증감(A-B)		
계	100,479,000	49,412,000	6,000,000	8,150,000	2,150,000	42,917,000	
국 비	100,479,000	49,412,000	6,000,000	8,150,000	2,150,000	42,917,000	국고
도 비	-	-	-	-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506,000	5,506,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관리팀	홍승원 (행) 2190	김성환 (행) 4705	가두순 (행) 4724

건 설 교 통 국

건 설 정 책 과

건설정책과

1.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지원(성립전) 14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지원(성립전)	정책사업	취약지 및 도시개발
	단위사업	스마트도시 구축
	세부사업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지원
- 사업 위치 : 공주시·부여군·태안군
- 사업 기간 : '20.3~12월(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980,000천원**
※ 증감 사유 : 국토부 공모선정에 따른 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추경 1,260,000천원(국비) 편성
- 사 업 량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3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부여군, 태안군
- 사업 내용 : 공주·부여·태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 지원근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5(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등)

-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스마트 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이라 한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통합 사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공주, 부여, 태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 2,862,000천원 · 서버 및 하드웨어 x 3식 = 813,000천원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x 3식 = 887,000천원 · 상용소프트웨어 x 3식 = 736,000천원 · 커스터마이징 x 3식 = 426,000천원 ※국고보조금(70%) 교부예산 반영, 향후 추경 시 공모선정 결과에 따라 도비 감액 계획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862,000	0	1,602,000	2,862,000	1,260,000	0	계속
국 비	1,260,000	0	0	1,260,000	1,260,000	0	국고
도 비	720,000	0	720,000	720,000	0	0	
시군비	882,000	0	882,000	882,000	0	0	
기 타	0	0	0	0	0	0	

* 보조율 : 국비 44%, 도비 25%, 시군비 31%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560,000	1,560,000	0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스마트혁신도시팀	이남재 (행) 2810	윤종한 (행) 4604	이혜원 (행) 2814

건 축 도 시 과

건축도시과

1.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20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정책사업	주택건설 및 운영
	단위사업	주택공급 및 시장안정
	세부사업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
	통 계 목	출자금 (5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민선 7기 공약사업
- 사업 위치 : 충남도내 (건설형 6개지구 : 아산, 천안, 당진, 예산, 홍성, 서천)
- 사업 기간 : 2019. 01. ~ 2022. 12..(계속사업)
- 예 산 액 : **39,300,000천원** [부담금(출자금) 35,000,000천원, 국비(공사공단자본전출금) 4,300,000천원]
※ 변경 사유 : 코로나19 긴급예산편성 재원확보에 따른 재원변경 [도비→지역개발기금(부담금)]
- 사 업 량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선도사업 1,000호 공급(건설형 900호, 매입형 100호)
- 사업시행방법 : 공사 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개발공사
- 사업 내용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36㎡, 44㎡, 59㎡)
- 지원 근거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세제지원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공공주택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사용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사업명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총사업비 산출기초] 총사업비 2,404억원(국비 338억원, 기금 350억원 도비 717.5억원, 기타 998.5억원) ○ 건축비 1,752억원 : 호당 평균건축비 194,661천원 × 900호 – 호당 평균 건축비(194,661천원) = 25.58평(84.4㎡) × 8,025천원(재정지원단가) · (국비) 37,557천원 : 15.6평(재정지원면적) × 8,025천원(재정지원단가) × 30% · (주택도시기금) 50,076천원 : 15.6평(재정지원면적) × 8,025천원(재정지원단가) × 40% · (임대보증금) 45,000천원 : 5천만원(59㎡)×60% + 4천만원(44㎡)×30% + 3천만원(36㎡)×10% · (도비 및 부담금) 62,028천원 : 호당평균건축비 - (국비 + 기금 + 임대보증금) * 평균공급면적(84.4㎡) [94㎡(59㎡형 공급면적)×60%] + [73.5㎡(44㎡형 공급면적)×30%] + [59㎡(36㎡형 공급면적)×10%] ○ 매입비(주택) 200억원 : 호당 매입비 200백만원 × 100호 – (도비) 5,750,000천원 : 57,500천원 × 100호 – (공사) 9,250,000천원 : 92,500천원 × 100호 – (임대보증금) 5,000,000천원 : 50,000천원 × 100호 ○ 매입비(부지) 29,177백만원 : 첫사업부지 25,000백만원+후속사업부지 4,177백만원 ○ 예비비 : 15,997백만원	

산출 기초	[2020년 추경예산 산출기초] ○ 재원변경 : (기정액) 도비 35,000,000천원, (예산액) 부담금 35,000,000천원 [출자계획] (단위 : 억원)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1,067.5	551.5	316.4	199.6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40,369,700	0	39,300,000	39,300,000	0	201,069,700	신규
국 비	33,801,300	0	4,300,000	4,300,000	0	29,501,300	국고
주택도시기금	45,068,400	0	0	0	0	45,068,400	충남개발공사
도 비	71,750,000	0	35,000,000	0	△35,000,000	71,750,000	
지역개발기금	35,000,000	0	0	35,000,000	35,000,000	0	
기 타	54,750,000	0	0	0	0	54,750,000	충남개발공사

* 보조율 : 국비 14%, 주택도시기금 19%, 도비 30%, 지역개발기금 14%, 기타 23%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더행복한주택팀	윤영산 (행) 2820	이정호 (행) 4645	김태영 (행) 4647

교 통 정 책 과

교통정책과

1. 시내버스 재정지원 26
2. 시외버스 재정지원 28
3. 법인택시 근무여건 개선 30
4. 개인택시 근무여건 개선 32
5.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성립전) 34
6.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보조)(성립전) 36
7.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성립전) 38
8.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보조)(성립전) 40
9. 안전한보행환경 조성사업(성립전) 42
10. 노인보호구역 개선(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성립전) 44
11.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성립전) 46

시내버스 재정지원(코로나19 대응)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시내버스 관련사업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코로나19 확산, 이용객 감소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휴업, 감회 등 필요불가결한 사항에서 비수익노선의 운행보전에 필요한 재정지원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 1. 1. ~ '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4,500,000천원
 - ※ 증감 사유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발생한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
- 사 업 량 : 15개 시·군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비수익노선 운행보전에 필요한 재정지원
- 지원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1항제2호, 충청남도 운수사업 지원조례 제4조

제50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수 있다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5. 그밖에 도지사가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 9,000,000천원 ○ 시내·농어촌버스 18개 업체의 비수익노선 운행보전 지원금 : 9,000,000천원 - 기정예산: 0천원 - 추경예산: 9,000,000천원(도 4,500,000, 시·군 4,500,000) ▶ 산출기초: 1,119대×대당 8,043천원(손실지원) = 9,0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9,000,000	0	0	9,000,000	9,000,000	0	신규
국 비	0	0	0	0	0	0	
도 비	4,500,000	0	0	4,500,000	4,500,000	0	
시군비	4,500,000	0	0	4,500,000	4,500,000	0	
기 타	0	0	0	0	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신규 사업일 경우 비교란에 신규 사업 표시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	최종인 (행) 2840	윤태노 (행) 4671	이종철 (행) 2842

시외버스 재정지원(코로나19 대응)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시외버스 관련사업 지원
	통 계 목	운수업계보조금 (307-09)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코로나19 확산, 이용객 감소에 따른 시외버스 노선 휴업, 감회 등 필요불가결한 사항에서 비수익노선의 운행보전에 필요한 재정지원
- 사업 위치 : 충청남도에 운행하는 시외버스 노선
- 사업 기간 : '20. 1. 1. ~ '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000,000천원
 - ※ 증감 사유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발생한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
- 사 업 량 : (주)금남고속 등 5개 업체 운행 노선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비수익노선 운행보전에 필요한 재정지원
- 지원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1항제2호, 충청남도 운수사업 지원조례 제4조

제50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수 있다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5. 그밖에 도지사가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시외버스 재정지원 : 2,000,000천원 ○ 시외버스 5개 업체의 비수익노선 운행보전 지원금 : 2,000,000천원 － 기정예산: 0천원 － 추경예산: 2,000,000천원(전액도비) ▶ 산출기초: 562대×대당 3,559천원(손실지원)=2,0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000,000	0	0	2,000,000	2,000,000	0	신규
국 비	0	0	0	0	0	0	
도 비	2,000,000	0	0	2,000,000	2,000,000	0	
시군비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신규 사업일 경우 비교란에 신규 사업 표시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	최종인 (행) 2840	윤태노 (행) 4671	김재식 (행) 4567

법인택시 근무여건개선(코로나19 대응)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택시 관련사업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코로나19 확산, 이용객 감소에 따른 법인택시운수사업자 경영개선과 운수종사자 생계 유지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 사업 위치 : 충남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 1. 1. ~ '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500,000천원
- ※ 증감 사유 : 코로나19 확산, 이용객 감소로 발생한 법인택시운수종사자 생계지원 및 근무여건 개선
- 사 업 량 : 법인택시운수종사자 3,029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법인택시 경영손실금과 운전원 생계비에 필요한 재정지원
- 지원근거 :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재정지원대상사업의 범위)

①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택시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사업

4. 복지회관 및 쉼터, 건강검진, 문화·체육 행사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노사문화 정착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법인택시 근무여건개선 : 3,000,000천원 ○ 법인택시 근무여건개선 : 3,000,000천원(도 1,500,000, 시군 1,500,000) - 추경예산: 3,000,000천원(500,000원(원가)×3,029명(법인택시운수종사자 수)×2개월)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000,000	0	0	3,000,000	3,000,000	0	신규
국 비	0	0	0	0	0	0	
도 비	1,500,000	0	0	1,500,000	1,500,000	0	
시군비	1,500,000	0	0	1,500,000	1,500,000	0	
기 타	0	0	0	0	0	0	자부담 등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신규 사업일 경우 비교란에 신규 사업 표시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0	0	0	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	최종인 (행) 2840	윤태노 (행) 4671	김단비 (행) 4568

개인택시 근무여건개선(코로나19 대응)	정책사업	대중교통 육성지원
	단위사업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세부사업	택시 관련사업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코로나19 확산, 이용객 감소에 따른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생계유지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 사업 위치 : 충남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 1. 1. ~ '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000,000천원
- ※ 증감 사유 : 코로나19 확산, 이용객 감소로 발생한 개인택시운수종사자 생계지원 및 근무여건 개선
- 사 업 량 : 개인택시운수종사자 4,000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개인택시 운전원 생계비에 필요한 재정지원
- 지원근거 :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재정지원대상사업의 범위)

①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택시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사업

4. 복지회관 및 쉼터, 건강검진, 문화·체육 행사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노사문화 정착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개인택시 근무여건개선 : 4,000,000천원 ○ 개인택시 근무여건개선 : 4,000,000천원(도 2,000,000, 시군 2,000,000) - 추경예산: 4,000,000천원(500,000원(원가)×4,000명(개인택시운수종사자 수)×2개월)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000,000	0	0	4,000,000	4,000,000	0	신규
국 비	0	0	0	0	0	0	
도 비	2,000,000	0	0	2,000,000	2,000,000	0	
시군비	2,000,000	0	0	2,000,000	2,000,000	0	
기 타	0	0	0	0	0	0	자부담 등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0	0	0	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하단은 작성 예시로 수정 작성 제출)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	최종인 (행) 2840	윤태노 (행) 4671	김단비 (행) 4568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성립전)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안전시설 확충
	세부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차도 분리 및 감속시설 등 각종 안전시설 보강
- 사업 위치 : 충남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일원
- 사업 기간 : 2020. 01. ~ 2020. 12.
- 예 산 액 : 540,000천원
※ 증감 사유 : 2020년 국비지원계획 확정에 따른 제1회 추경사항 반영
- 사 업 량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32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해당시군
- 사업 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선도색, 안전시설물 설치 등 개선
- 지원근거 : 도로교통법 제138조의 2(국고보조), 정부의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국정 과제

도로교통법 제138조의 2(비용의 지원)

-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보호구역에는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보호구역개선 32개소, 1,080,000천원(국비 540,000천원, 시군비 540,000천원) - 천안시 4개소 96,000천원(국비 48,000, 시비 48,000) - 공주시 2개소 76,000천원(국비 76,000, 시비 76,000) - 보령시 2개소 64,000천원(국비 32,000, 시비 32,000) - 아산시 10개소 438,000천원(국비 219,000, 시비 219,000) - 서산시 1개소 16,000천원(국비 8,000, 시비 8,000) - 논산시 1개소 14,000천원(국비 7,000, 시비 7,000) - 당진시 2개소 96,000천원(국비 48,000, 시비 48,000) - 금산군 3개소 56,000천원(국비 28,000, 군비 28,000) - 부여군 1개소 18,000천원(국비 9,000, 군비 9,000) - 서천군 2개소 44,000천원(국비 22,000, 군비 22,000) - 홍성군 1개소 108,000천원(국비 54,000, 군비 54,000) - 예산군 2개소 44,000천원(국비 22,000, 군비 22,000) - 태안군 1개소 10,000천원(국비 5,000, 군비 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760,000	3,680,000	580,000	1,080,000	500,000	0	
국 비	2,380,000	1,840,000	290,000	540,000	250,000	0	
도 비	0	0	0	0	0	0	
시군비	2,380,000	1,840,000	290,000	540,000	250,000	0	
기 타	0	0	0	0	0	0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840,000	1,84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미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안전팀	최 종 인 (행) 2840	이 승 철 (행) 4571	조 경 상 (행) 2843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시군)(성립전)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안전시설 확충
	세부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보조)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교통사고 요인제거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불합리한 교차로 개선으로 교통사고 감소
- 사업 위치 : 충남도내 지방도로 교차로
- 사업 기간 : 2020. 01 ~ 2020. 12.
- 예산액 : **355,000천원**
 - ※ 증감 사유 : 2020년 국비지원계획 확정에 따른 제1회 추경사항 반영
- 사업량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5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장, 공주시장, 당진시장, 부여군수, 예산군수
- 사업 내용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5개소
- 지원근거 : 교통안전법 제9조제1항,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제6차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계획(2017~2021),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 정부의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국정 과제

교통안전법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 ①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지원 등 재정·금융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시군 보조) ○ 잦은 곳 개선 5개소, 710,000천원(국비 355,000천원, 시군비 355,000천원) - 천안시 1개소 160,000천원(국비 80,000, 시비 80,000) - 공주시 1개소 70,000천원(국비 35,000, 시비 35,000) - 당진시 1개소 150,000천원(국비 75,000, 시비 75,000) - 부여군 1개소 220,000천원(국비 110,000, 군비 110,000) - 예산군 1개소 110,000천원(국비 55,000, 군비 5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10,000	300,000	300,000	710,000	410,000	0	
국 비	505,000	150,000	150,000	355,000	205,000	0	
도 비	0	0	0	0	0	0	
시군비	505,000	150,000	150,000	355,000	205,000	0	
기 타	0	0	0	0	0	0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67,000	167,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미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안전팀	최 종 인 (행) 2840	이 승 철 (행) 4571	조 경 상 (행) 2843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성립전)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안전시설 확충
	세부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교통사고 요인제거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불합리한 교차로 개선으로 교통사고 감소
- 사업 위치 : 충남도내 지방도로 교차로
- 사업 기간 : 2020. 01 ~ 2020. 12.
- 예산액 : 220,000천원
- ※ 증감 사유 : 2020년 국비지원계획 확정에 따른 제1회 추경사항 반영
- 사업량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4개소
- 사업시행방법 : 도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홍성지소
- 사업 내용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4개소
- 지원근거 : 교통안전법 제9조제1항,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제6차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계획(2017~2021),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 정부의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국정 과제

교통안전법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 ①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지원 등 재정·금융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 잦은 곳 개선 4개소, 220,000천원(국비 145,000천원, 도비 75,000천원) - 논산 강경읍 황산대교 앞 사거리 35,000천원(도비 35,000) - 서천 장항항~등기소네거리 35,000천원(도비 35,000) - 홍성 김좌진장군상오거리 75,000천원(국비 38,000, 도비 37,000) - 아산 명암리 981번지 교차로 75,000천원(국비 37,000, 도비 38,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16,000	96,000	150,000	220,000	70,000	0	
국 비	193,000	48,000	75,000	145,000	70,000	0	
도 비	123,000	48,000	75,000	75,000	0	0	
시군비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8,000	48,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미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안전팀	최 종 인 (행) 2840	이 승 철 (행) 4571	조 경 상 (행) 2843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시군)(성립전)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안전시설 확충
	세부사업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보조)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교통사고 요인제거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불합리한 교차로 개선으로 교통사고 감소
- 사업 위치 : 충남도내 지방도로 교차로
- 사업 기간 : 2020. 01 ~ 2020. 12.
- 예 산 액 : **350,000천원**
※ 증감 사유 : 2020년 국비지원계획 확정에 따른 제1회 추경사항 반영
- 사 업 량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4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계룡시장, 청양군수, 예산군수, 태안군수
- 사업 내용 : 회전교차로 설치 5개소
- 지원근거 : 교통안전법 제9조제1항,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제6차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계획(2017~2021),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 정부의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국정 과제

교통안전법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 ①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지원 등 재정·금융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시군) ○ 회전교차로 설치 5개소, 700,000천원(국비 700,000천원, 시군비 700,000천원) - 계룡시 왕대오거리 1개소 140,000천원(국비 70,000, 시비 70,000) - 청양군 지곡교차로 1개소 140,000천원(국비 70,000, 시비 70,000) - 예산군 주령교차로 1개소 140,000천원(국비 70,000, 시비 70,000) - 태안군 체육관사거리 1개소 140,000천원(국비 70,000, 시비 70,000) - 태안군 군청오거리 1개소 140,000천원(국비 70,000, 시비 7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600,000	2,900,000	560,000	700,000	140,000	0	
국 비	1,330,000	980,000	280,000	350,000	70,000	0	
도 비	0	0	0	0	0	0	
시군비	2,270,000	1,920,000	280,000	350,000	70,000	0	
기 타	0	0	0	0	0	0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980,000	98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미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안전팀	최 종 인 (행) 2840	이 승 철 (행) 4571	조 경 상 (행) 2843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성립전)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안전시설 확충
	세부사업	안전한보행환경 조성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차량중심의 도로환경을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
- 사업 위치 : 충남도내 일원
- 사업 기간 : 2020. 01 ~ 2020. 12.
- 예 산 액 : 1,050,000천원
- ※ 증감 사유 : 2020년 국비지원계획 확정에 따른 제1회 추경사항 반영
- 사 업 량 : 보행환경개선 3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서산시, 논산시, 홍성군수
- 사업 내용 : 보행자 중심 보행환경 개선
- 지원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부의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국정 과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 보행환경 개선 3개소 2,100,000천원(국비 1,050,000천원, 시군비 1,050,000천원) - 서산시 보행자우선도로(서산여고) 300,000천원(국비 150,000, 시비 150,000) - 논산시 보행환경개선(동고동락) 800,000천원(국비 400,000, 시비 400,000) - 홍성군 보행자우선도로(홍주천년) 1,000,000천원(국비 500,000, 군비 5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200,000	1,100,000	1,100,000	2,100,000	1,000,000	0	
국 비	1,600,000	550,000	550,000	1,050,000	500,000	0	
도 비	0	0	0	0	0	0	
시군비	1,600,000	550,000	550,000	1,050,000	500,000	0	
기 타	0	0	0	0	0	0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50,000	55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미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안전팀	최 종 인 (행) 2840	이 승 철 (행) 4571	조 경 상 (행) 2843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성립전)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안전시설 확충
	세부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보강·정비를 통한 노인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등 16개 노인보호구역
- 사업 기간 : 2020. 01 ~ 2020. 12.
- 예 산 액 : 575,000천원
 - ※ 증감 사유 : 2020년 국비지원계획 확정에 따른 제1회 추경사항 반영
- 사 업 량 : 노인보호구역 정비 10개 시군, 39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장 등 10개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보호구역 표지,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안전펜스 등 시설확충
- 지원근거 : 도로교통법 제138조의 2(국고보조), 정부의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국정 과제

도로교통법 제138조의 2(국고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의 교통 사고 발생률이 높은 보호구역에는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 보호구역개선 39개소, 1,150,000천원(국비 575,000천원, 시군비 575,000천원) - 천안시 2개소 56,000천원(국비 28,000, 시비 28,000) - 공주시 2개소 80,000천원(국비 40,000, 시비 40,000) - 보령시 2개소 44,000천원(국비 22,000, 시비 22,000) - 아산시 5개소 240,000천원(국비 120,000, 시비 120,000) - 서산시 3개소 80,000천원(국비 40,000, 시비 40,000) - 당진시 9개소 180,000천원(국비 90,000, 시비 90,000) - 부여군 2개소 60,000천원(국비 30,000, 군비 30,000) - 서천군 2개소 30,000천원(국비 15,000, 군비 15,000) - 홍성군 2개소 60,000천원(국비 30,000, 군비 30,000) - 예산군 9개소 320,000천원(국비 180,000, 군비 18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050,000	900,000	0	1,150,000	1,150,000	0	신규
국 비	1,025,000	450,000	0	575,000	575,000	0	
도 비	0	0	0	0	0	0	
시군비	1,025,000	450,000	0	575,000	575,000	0	
기 타	0	0	0	0	0	0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50,000	45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미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안전팀	최 종 인 (행) 2840	이 승 철 (행) 4571	조 경 상 (행) 2843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성립전)	정책사업	도로망확충 유지관리
	단위사업	도로안전시설 확충
	세부사업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도로교통법 제138조의 2(국고보조)

☐ 산출 근거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사업 ○ 과속카메라 및 신호기 228개소 1,800,000천원(국비 900,000천원, 시군비 900,000천원) - 천안시 42개소 320,000천원(국비 160,000, 시비 160,000) - 공주시 14개소 108,000천원(국비 54,000, 시비 54,000) - 보령시 12개소 108,000천원(국비 54,000, 시비 54,000) - 아산시 41개소 380,000천원(국비 190,000, 시비 190,000) - 서산시 12개소 118,000천원(국비 59,000, 시비 59,000) - 논산시 15개소 118,000천원(국비 59,000, 시비 59,000) - 계룡시 2개소 18,000천원(국비 9,000, 시비 9,000) - 당진시 15개소 116,000천원(국비 58,000, 시비 58,000) - 금산군 8개소 64,000천원(국비 32,000, 군비 32,000) - 부여군 11개소 86,000천원(국비 43,000, 군비 43,000) - 서천군 8개소 64,000천원(국비 32,000, 군비 32,000) - 청양군 7개소 58,000천원(국비 29,000, 군비 29,000) - 홍성군 16개소 78,000천원(국비 39,000, 군비 39,000) - 예산군 15개소 86,000천원(국비 43,000, 군비 43,000) - 태안군 10개소 78,000천원(국비 39,000, 군비 39,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800,000	0	0	1,800,000	1,800,000	0	신규
국 비	900,000	0	0	900,000	900,000	0	
도 비	0	0	0	0	0	0	
시군비	900,000	0	0	900,000	900,000	0	
기 타	0	0	0	0	0	0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미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안전팀	최 종 인 (행) 2840	이 승 철 (행) 4571	조 경 상 (행) 2843

도 로 철 도 항 공 과

도로철도항공과

1. 서산~부석(지방도649호) 확포장 사업 52

서산~부석(지방도649호) 확포장 사업	정책사업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단위사업	지방도 정비사업
	세부사업	서산~부석 (지방도649호) 확포장
	통 계 목	시설비 및 감리비 (401-01, 401-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여 물류비용 절감, 지역주민 교통편의성 제공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 위치 : 서산시 예천동 ~ 부석면 대두리 지내
- 사업 기간 : 2010. 1. ~ 2021. 1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1,588,000천원**[부담금(출자금) 12,650,000천원, 도비 8,938,000천원]
- ※ 변경 사유 : 코로나19 긴급예산편성 재원확보에 따른 재원변경 [도비→지역개발기금(부담금)]
- 사 업 량 : 4차로 확장 L=8.4km, B=21.5m, 교량 5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서산~부석(지방도649호) 확·포장공사 L=8.4km, B=21.5m
- 지원근거 : 「도로법」 제6조 제1항

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소관 도로(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 건설·관리계획(이하 "건설·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서산~부석 지방도 확·포장공사(총사업비 98,539,000천원) ○ 공사비 : 64,686,731천원 · 도급 43,122,651천원, 관급 16,982,697천원, 기타 4,581,383천원 ○ 부대비 : 100,000천원 ○ 감리비 : 3,731,269천원 ○ 설계비 : 2,877,000천원 ○ 보상비 : 27,144,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98,539,000	76,951,000	21,588,000	21,588,000	0	0	계속
국 비	0	0	0	0	0	0	
도 비	85,889,000	76,951,000	21,588,000	8,938,000	-12,650,000	0	
시군비	0	0	0	0	0	0	
지역개발기금	12,650,000	0	0	12,650,000	12,650,000	0	

* 보조율 : 도비 100%

※ 신규 사업일 경우 비교란에 신규 사업 표시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5,741,123	15,291,399	422,724	97.3%	422,724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적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2009.4월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김택중 (행) 2830	이강섭 (행) 4671	조용백 (행) 4673

해 양 수 산 국

수 산 자 원 과

수 산 자 원 과

1. 강마을 어울림사업(성립전)	60
-------------------------	----

강마을 어울림사업(성립전)	정책사업	수산업경쟁력강화
	단위사업	수산자원 보호육성
	세부사업	내수면기반조성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내수면에 인접한 어촌지역의 인프라 확충·균형발전, 어촌공동체 활성화
- 사업 위치 : 아산시(아산호,삽교호 일원)
- 사업 기간 : 2020. 1. 1.~ 2020. 12. 31.(신규 사업)
- 예 산 액 : 224,175천원
 - ※ 증감 사유 : 공모사업 확정에 따른 국비 증액
- 사업 량 :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아산시
- 사업 내용 : 쌀조개 공동체 내륙어촌 재생사업 실시설계
- 지원 근거 : 내수면어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보조 대상사업)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내수면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강마을 어울림사업 : 278,198천원(국비180,075/ 도비 44,100/ 시군비 54,023) ·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비 등 - 278,198천원 × 1개소 = 278,198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 (B)	증감(A-B)		
계	278,198	0	0	278,198	234,098		신규
국 비	180,075	0	0	180,075	180,075		
도 비	44,100	0	44,100	44,100	0		
시군비	54,023	0	0	54,023	54,023		
기 타		0	0	0	0		

* 보조율 : 국비 65%, 도비 16%, 시군비 19%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수산자원팀	김종섭 (행) 2770	이봉우 (행) 4124	유송이 (행) 4133

소 방 본 부

119 광역기동단

119 광역기동단

1. 코로나19 대응 감염방지 물품 등 구입(성립전) 68

코로나19 대응 감염방지 물품 등 구입(성립전)	정책사업	119광역재난대응체계 구축
	단위사업	특수재난대응체계 확립
	세부사업	119구급체계 구축지원
	통 계 목	재료비 (206-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코로나19’ 관련 감염(의심)환자 이송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해 감염방지물품을 보급하여 현장활동 중 직·간접 접촉으로 인한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함.
- 사업 위치 : 16개 소방서
- 사업 기간 : 2020. 3. ~ 2020.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35,000천원**
- ※ 증감 사유 :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에 따른 확진 및 의심환자 이송 119구급대원 감염방지
- 사 업 량 : 감염방지물품 2종 11,000점(감염방지 보호복 10,000세트, 장비 소독액 1,000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소방본부
- 사업 내용 : 119구급대원 2차 감염방지를 위한 보호복 세트 및 소독액 구입
- 지원근거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2항 1호, 코로나19 감염대응 관련 119구급대 이송지침(2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 소방청 코로나19 감염대응 관련 119구급대 이송지침(2판)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개인보호구(Level D)의 착용 및 장비소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코로나19 대응 감염방지 물품 등 구입 : 335,000천원 ○ 감염방지 보호복 및 장비 소독액 구입 : 335,000천원 · 감염방지 보호복(5종세트) 30천원 × 10,000세트 = 300,000천원 · 장비 소독액(바이로비트 / 4리터) 35천원 × 1,000점 = 3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35,000	0	0	335,000	335,000	0	신규
국 비	335,000	0	0	335,000	335,000	0	특별교부세
도 비	0	0	0	0	0	0	
시군비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0	0	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소방본부	119광역기동단	구급팀	김남석 (행) 5710	김상식 (행) 5722	서인원 (행) 5734

